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내 용

창원시 의창구 ○○○○과에서는 1982. 10. 12. 골프장(회원 18홀)으로 승인된 (주)○○컨트리클럽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세분류에 골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으로 분류하고 교통유발계수 1.04를 적용하고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지난 5년간 8,178천원 부과)을 부과하였다.

시설물명	시설면적 (㎡)	등록일자 (승인일자)	건물총면적 (㎡)	부과면적 (㎡)	교통유발 부담금
(주)○○컨트리클럽	1,048,959 (회원 18홀)	1984.9.21. (1982.10.12.)	5,258.74	4,577.93	(2016년) 1,768,610원

☞ 창원시 ○○○○과 시설물 부과정보 자료 인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단위부담금)와 제3조의 3(교통유발계수)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가.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나.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 담 금 산 출 식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대분류	세 분 류	도시규모(단위: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04	0.96	0.96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그러나 창원시 의창구 ○○○○과에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로 적용한 운동시설 체육관은 골프장과 시설의 규모, 용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비고 2호에 의해“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주변지역 골프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례와 비교해 볼 경우 창원시에서 1988. 11. 8. 승인한 ○○컨트리클럽(회원 27홀)과 인근 김해시에서 1994.3.23. 승인한 ○○컨트리클럽(회원 45홀)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계수가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창원시 의창구 ○○○○과에서는 (주)○○컨트리클럽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체육관으로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난 5년간 추정가능 금액 23,058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지난 5년간 (주)○○컨트리클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년도	적용계수		금액(원)		미징수액(원)
	당초	재산정	당초	재산정	
2012	1.04	4.80	1,538,180	3,845,460	2,307,270
2013			1,538,180	3,845,460	2,307,270
2014			1,666,360	7,690,920	6,024,550
2015			1,666,360	7,690,920	6,024,550
2016			1,768,610	8,162,830	6,394,220
합 계			8,177,690	31,235,590	23,057,860

※ 창원시 ○○○○과 제출자료 인용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23백만원 상당은 조속히 부과조치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